

보건복지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4항 개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서식 개정안,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확인받기 위한”을 “확인받고, 그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의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력관리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 간주 신청된 경우, 실제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의 1. 나.를 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의 1.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것으로 추후 신청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의 1. 다.(종전의 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란 중 “이력조사”를 “이력조사 및 제13조의2제4항의 신청 간

주에 따른 제15조제1항제1호의 조사”로, 같은 서식 중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을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기존에 수집·관리되고 있는 정보 포함)를”로 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고, 그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 간주 신청된 경우, 실제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것으로 추후 신청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다.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 조사입니다. 다만,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 및 제13조의2제4항의 신청 간주에 따른 제15조제1항제1호의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기준에 수집·관리되고 있는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연 락 처	(044) 202 - 3671